

의안번호	2210577
의 퇴 인	최보운의원
회 답 일	2025.8.22.
추계번호	25B296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택시 구매비용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12억 9,500만원 등 향후 5년 간 112억 9,500만원(연평균 22억 5,9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전세버스의 이용보장 등 (안 제14조의2)		11,295	-	-	-	-	11,295	2,259
	국비	5,648	-	-	-	-	5,648	1,130
	지방비	5,648	-	-	-	-	5,648	1,130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택시 도입비용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재하여,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의 부족분의 평균 수준만큼 도입할 경우 소요비용을 추산한 결과로, 택시 지원대수와 지원단가는 향후 사업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계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될 경우 본 추계값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함 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	의무규정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선장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강장	
2	안 제6조제2항제5호(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5. 저상(底床)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또는 택시 의 도입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3	안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송사업자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4	안 제26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2.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또는 택시 의 표준모델 개발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조(정의)	×	•(미첨부3호) 개정안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범위에 도선과 택시를 추가하고 있어, 도로관리청(국토교통부장관과 행정청)¹⁾은 동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실시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동법 제9조²⁾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0조³⁾ 및 제11조⁴⁾는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은 대상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대상시설별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와 구조·재질 등 설치기준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개정안에 따른 도선과 택시 및 각 정류장 등 여객시설의 경우 하위법령에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대상 시설의 물량과 시설 설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치 단가 등이 현시점에 확정적이지 않아 추계가 곤란한 사유에 해당함
2	안 제6조제2항제5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 등)	○	• (추계) 개정안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택시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택시는 동법 제2조5)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에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에서는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택시 도입 수요가 불확정적이므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의 부족분의 평균 수준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를 추산함
	안 제14조의2 (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3	안 제26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	×	• (미첨부3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택시의 표준모델 개발 등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연구·개발 사업 범위·내용, 수행기관, 소요기간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1)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2)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3)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이하 “설치·관리자”라 한다)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2023. 9. 14.>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2조(정의)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택시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택시를 도입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에 대한 국고 지원사업(‘저상버스 도입보조’ 및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의2에 따라 이러한 사업의 지원 대상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저상버스 도입보조: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 구입 비용 지원(2025년 1,603억원)
 -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 휠체어 탑승 가능한 시외버스, 전세버스 차량 제작비용 지원(2025년 3.5억원)
 - 현행법 제2조제8호는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정의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택시도 특별교통수단의 유형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택시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안이 시행된 후 수립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정해질 것이므로, 현시점에 재정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을 확정하기가 곤란함
- 다만, 현재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증진과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택시를 추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이 필요한 택시 도입 물량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부족분의 평균 수준으로 가정함

-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운행 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⁶⁾에 따라 인구 10만명 초과 시·군은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100명당 1대 이상)임
- 국토교통부의 2021~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결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법정 기준 대비 부족분은 평균 753대로 나타남

[표 2]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기준 미충족 시·군의 부족물량: 2021~2023년도
(단위: 대수)

	2021	2022	2023	평균
부족대수	841	908	510	753

자료: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각 년도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택시 지원물량에 지원단가를 곱하여 추산함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1.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시·군"이라 한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중증보행장애인"이라 한다) 100명당 1대
 2.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우: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가. 도입물량

-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택시 도입물량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부족분의 평균 수준을 도입하는 것으로 가정함
 - 국토교통부의 2021~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는 법정 기준 대비 2021년 841대, 2022년 908대, 2023년 510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 동안 평균 부족분은 753대로 나타나고 있어, 동 규모를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택시 지원 물량으로 가정함
 - 사업물량은 추계 첫 해인 2027년에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3]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택시 지원물량 전망: 2027~2031년

(단위: 대)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물량	753	-	-	-	-	753

나. 지원단가

- 현재 정부의 지원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동법 제14조의27)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8)에 따른 전세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지원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함
 - 현행 정부의 전세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비 지원방식은 휠체어탑승설비가 설치된 버스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버스의 구입비용과 일반 버스의 구입비용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택시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택시를 구매하는 경우 일반택시

7)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8)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2. 휠체어탑승설비가 설치된 버스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버스의 구입비용과 일반 버스의 구입비용 간 차액

보다 구매가격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간의 구입가격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일반택시의 경우 2,500~3,500만원 수준⁹⁾, 조달청 나라장터의 공개가격에 따르면 휠체어 탑승 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5,000만원 수준으로 약 1,500~2,50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
- 본 추계에서는 이들 차액의 최소값 1,500만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재원부담비율: 현행 특수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 국고보조율 50%를 준용

다. 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택시 구매비용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12억 9,5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4]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택시 구매비용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지원대수(A)	753	-	-	-	-	753
지원단가(B)	15	-	-	-	-	-
합계(A×B)	11,295	-	-	-	-	11,295
국비	5,648	-	-	-	-	5,648
지방비	5,648	-	-	-	-	5,648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택시 도입비용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재하여,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의 부족분의 평균 수준만큼 도입할 경우 소요비용을 추산한 결과로, 택시 지원대수와 지원단가는 향후 사업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계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될 경우 본 추계값을 상회할 수 있음

9) A사 택시 2,480~3,600만원, B사 택시 3,5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남(각 차량회사 홈페이지 검색 기준), 전기택시는 정부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격 고려 시 제외함
조달청 나라쇼핑몰에 등록된 장애인콜택시(카니발, 저상리프트형)의 경우 5,000만원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택시 도입비용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재하여,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의 부족분의 평균 수준만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을 추산한 결과로, 택시 지원대수와 지원단가는 향후 사업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계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될 경우 본 추계값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